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④

자료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도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원재활용법의 하위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환경부 고시) 등의 3개이다. 다음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세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제31조[제17조로 이동 <2009. 4. 6.>]

제31조[제17조로 이동 <2009. 4. 6.>]

제32조(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종이제조업
2. 유리용기제조업
3. 제철 및 제강업

[전문개정 2009. 4. 6.]

제33조(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지정사업자 중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하여는 재활용 방안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재활용 방안은 기업의 규모, 재활용시설 현황, 기술능력 및 재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 가. 종이제조업 : 종이를 연간 1만 톤 이상 생산하는 자
- 나. 유리용기제조업 : 유리용기를 연간 2만 톤 이상 생산하는 자

다. 제철 및 제강업 : 조강(粗鋼) 또는 선철(銑鐵)을 연간 10만 톤 이상 생산하는 자

2.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수거량, 국내의 재활용기술 수준과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과 효율적인 재활용방법·절차 등을 준수하도록 한다. 이 경우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은 관련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하여야 한다.

3.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적을 기록·보존하도록 한다.

4.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수입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전문개정 2009. 4. 6.]

제34조 삭제 <2007. 12. 28.>

제35조(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법 제2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이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하여는 재활용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재활용은 기업의 규모, 재활용시설 현황, 기술 능력 및 재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가. 철강슬래그 : 조강 또는 선철을 연간 10만 톤 이상 생산하는 자

나. 석탄재 : 전력을 연간 1억 킬로와트시 이상 공급하는 자

2.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정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부산물을 분리·파쇄·선별 및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지정부산물의 성질과 상태, 배출 특성과 국내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재활용 방안을 준수하도록 한다.

3.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정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발생된 지정부산물을 다른 업종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재활용하게 하는 등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유도한다.

4.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정부산물의 재활용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적을 기록·보존하도록 한다.

[전문개정 2009. 4. 6.]

제35조의 2(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개선명령)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의 8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개선명령의 이유 및 내용

2.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포장과 법률

3. 개선명령의 이행결과 조사·확인 예정일

4. 그 밖에 개선명령의 이행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행기간은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와 개선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의 8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4. 7. 21.]

제35조의 3(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 11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의 11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과이유 및 부과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 신설 2014. 7. 21.]

제35조의 4(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 절차) ①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회원의 명단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폐자원의 에너지화 확대 및 관련 기술의 향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허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 7. 21.]

제35조의 5(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6조 제4항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5. 회원의 자격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② 제35조의 4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
2.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③ 제35조의 4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는 그 대표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4. 7. 21.]

제36조(재활용산업 육성 대상사업) 법 제31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3. 11. 20.>

1. 제4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활용사업
2. 재활용제품의 판매사업
3.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장비나 재활용시설을 설계·생산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 4. 6.]

제37조(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원) 환경부장관은 회수·재활용 실적이 우수한 재활용지정사업자를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자금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11. 20.>

[전문개정 2009. 4. 6.]



포장과 법률

제38조 삭제 <2005. 6. 13.>

제39조 삭제 <2005. 6. 13.>

제40조(재활용단지의 조성자)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09. 12. 24.>

1. 한국환경공단
2. 삭제 <2009. 12. 24.>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 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재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개정 2009. 4. 6.]

제41조(재활용단지의 조성) 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단지(이하 “재활용단지”라 한다)를 조성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7. 12. 26.>

[전문개정 2009. 4. 6.]

제42조(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 ①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은 재활용단지를 조성한 자가 가진다.

② 환경부장관이 조성한 재활용단지의 경우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 12. 24.>

1. 시·도지사
2. 한국환경공단
3. 삭제 <2009. 12. 24.>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단지를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운영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4. 6.]

제43조(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공장용지의 공급) ① 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권자는 조성된 산업단지의 일부 지역을 재활용사업자의 공장용지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공장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장용지의 공급 필요성과 수요 면적 및 공급 대상업체 등의 범위를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권자에게 공장용지의 우선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6.]

제44조(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수집·보관·선별·처리대상 재활용가능자원 등) 법 제34조의 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2009. 12. 31.>

1. 제18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제품·포장재
2. 폐지(廢紙)
3. 고철
4. 그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것

[전문개정 2009. 4. 6.]

제44조(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수집·보관·선별·처리대상 재활용가능자원 등) 법 제34조의 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2009. 12. 31., 2018. 12. 31.>

1. 제18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 2 및 제7호의 제품·포장재
2. 폐지(廢紙)
3. 고철
4. 그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것

[전문개정 2009. 4. 6.]

[시행일 : 2020.1.1.] 제44조 제1호

제45조 삭제 <2009. 4. 6.>

제46조(자원재활용협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5조 제1항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재활용제품의 생산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재활용의무생산자
2. 공제조합
3.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재활용지정사업자
4. 재활용제품의 생산자
5.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운반하거나 중간 가공처리하는 자



포장과 법률

6. 그밖에 폐기물 재활용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자

②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회(이하 “자원재활용협회”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 또는 규약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설립 연월일
5. 회원의 수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회원의 구성 등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주체의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용촉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원재활용협회는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정관 또는 규약이나 사업계획서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자원재활용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에산서

[전문개정 2009. 4. 6.]

제46조의 2(폐기물부담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다음 각 호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4. 2. 11.>

1. 제12조 제4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
2. 제13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에 대한 결과의 통지
3. 제14조의 3 제5항에 따른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의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징수유예 취소의 통지
4. 제28조 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 신설 2010. 12. 20.]

제46조의 3 삭제 <2017. 12. 26.>

제47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3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7. 12. 26.>

1. 법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대상자 확인 및 징수를 위한 자료의 제출
2. 법 제15조의 3 제1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의 사용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
3.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
4.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대상자 확인 및 징수를 위한 자료의 제출
5. 법 제31조에 따른 자금지원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자료의 제출
6.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
7. 자원재활용기술개발계획 및 실적 자료의 제출

[전문개정 2009. 4. 6.]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2016. 1. 19., 2016. 12. 30.>

1. 법 제15조의 4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보상
2. 법 제4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 2, 제7호의 2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14. 7. 21.>

1. 법 제25조의 4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품연료제품 수입 신고·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확인증의 발급
2. 법 제25조의 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품연료제품의 수입금지 및 개선 명령
3. 법 제25조의 1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품연료제품의 수입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4. 법 제38조의 2 제1호에 따른 고품연료제품의 수입금지명령 시 청문
5.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가. 법 제41조 제1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고형연료제품의 수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

나. 법 제41조 제1항 제15호

다. 법 제41조 제1항 제16호[법 제36조 제1항 제10호 및 제11호(고형연료제품의 수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개정 2009. 12. 24., 2010. 12. 20., 2012. 10. 29., 2013. 1. 22., 2013. 11. 20., 2014. 2. 11., 2014. 7. 21., 2017. 12. 26.>



포장과 법률

1.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징수
 - 1의 2. 법 제12조 제4항에 따른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
 2. 법 제12조 제5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
 3. 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
 4. 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
 - 4의2. 법 제25조의 14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 4의3. 법 제25조의 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설치·운영
 5. 법 제34조의 7 제2항에 따른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및 검사(위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7. 법률 제6653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예치금의 부과·징수 및 반환
 8. 제12조 제1항에 따른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제출 자료의 접수
 9. 제12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의 산출 및 납부고지
 10.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의 접수 및 결과통지
 - 10의2. 제13조 제3항에 따른 현장실사
 11. 제14조에 따른 수입업자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정산 및 반환
 - 11의2. 제14조의 3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승인 및 징수유예의 취소
 - 11의3. 제14조의 5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12.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 등의 조사·확인 및 폐기물부담금 차액의 납부고지
 13. 제16조 제2호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
 14.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에 관한 제출 자료의 접수
 15. 제24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접수
 16. 제25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검토·승인 및 제출 자료의 접수
 17. 제26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접수
 18. 제2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정, 부과 및 납부고지
 19.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에 대한 조사·확인 및 재활용부과금 차액의 납부고지
 20. 제46조의 2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처리결과의 통보
-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의 2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업무를 공제조합에 위탁한다.<신설 2013. 11. 20., 2014. 7. 21.>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의 2 제2항에 따른 표준용기의 사용등록 접수에 관한 업무를 법 제28조의 2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에 위탁한다.<신설 2016. 1. 19.>

[전문개정 2009. 4. 6.]

제48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48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 제4항에 따른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 제5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6. 제14조의 3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7. 제2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정·부과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5. 11. 26.]

제49조(폐기물부담금 등의 회계기관) 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제48조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부담금세입징수관을, 그 직원 중에서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4.>

②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세입징수관 및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감사원장,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4.>

[전문개정 2009. 4. 6.]

제49조의 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9.>

1. 제7조에 따른 포장의 재질·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 2014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 2014년 1월 1일
3. 제32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 : 2015년 1월 1일
4. 제33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 2015년 1월 1일
5. 제35조에 따른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 2014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3. 12. 30.]

제5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